

# 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제안

## 탄소제로 생태사회 전환

# 제로백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퍼센트 / 1회용품 &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 자원순환사회 전환 100퍼센트  
환경기준 위반 & 영업비밀 제로 - 건강하고 책임지는 안전사회 전환 100퍼센트 / 국토 막개발 제로 - 1인당 도시공원면적 달성 100퍼센트  
쓸모없는 댐 제로 - 4대강 자연성 회복 100퍼센트 /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제로 - 해양 생태계 지속가능성 100퍼센트  
먹거리 불평등 제로 -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회전환 100퍼센트 / 환경부정의 제로 - 환경개발사업 주민의견수렴 100퍼센트

---

# 탄소제로 생태사회 전환 제로100

---

■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퍼센트	1
▪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	
▪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마련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 1회용품 &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 자원순환사회 전환 100퍼센트	8
▪ 플라스틱세 도입	
▪ 산업계 플라스틱 감량 로드맵 수립	
▪ 음식물 쓰레기 전국 실태조사 및 감량방안 제도 마련	
■ 환경기준 위반 & 영업비밀 제로 - 건강하고 책임지는 안전사회 전환 100퍼센트	10
▪ 화학물질관리기본법 제정	
▪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 국토 막개발 제로 - 1인당 도시공원면적 달성 100퍼센트	14
▪ 국립공원 개발공약 금지	
▪ 자연 침해 조정제도 도입	
▪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예산 증액	
▪ 도시공원 일몰지 난개발 우려 지역 매입에 대한 국고지원	
■ 쓸모없는 댐 제로 - 4대강 자연성 회복 100퍼센트	17
▪ 4대강 자연성 회복법 제정	
▪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하천관리 환경부 이관	
■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제로 - 해양 생태계 지속가능성 100퍼센트	20
▪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 어구관리법 제정	
■ 먹거리 불평등 제로 -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회전환 100퍼센트	23
▪ GMO 완전 표시제 도입	
▪ 아동 건강먹거리 종합정책 수립	
■ 환경부정의 제로 - 환경개발사업 주민의견수렴 100퍼센트	25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 강화	
▪ 오르후스협약 가입	

---

---

# I.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퍼센트

---

## 1. 기후변화 대응

### I. 제안배경

- 기후위기 현실화
  - 산불, 폭염, 태풍, 홍수 등 극단적 기후재난 확대, 취약집단 피해 가중
  - 영국, 스페인 등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기후 비상사태 선언 확대
-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 본격화
  - 2020년 말 영국에서 개최될 기후변화협약 26차 총회에서 파리협정 최종협상
  - 유엔은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45% 감축,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계획 수립을 권고
- 기후변화 대응 및 이행점검 체계 미흡
  -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 최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실패
  -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응법안 발의됐지만, 번번이 파기
- 일자리 문제 및 불평등 악화
  - 화석연료 산업 퇴출 가속화되지만, 정부 차원의 산업 및 일자리 전환 대책 미흡
  - 유럽연합 '그린딜' 선언, 미국 대선 그린뉴딜 논의 활성화

### II. 정책제안

-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 정부와 국회는 국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언론과 협력해 시민과 사회에 알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
  -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의 폐지(대규모 개발, 화석연료 보조금 등)
-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2030년 목표 강화
  -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수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 파리협정 1.5°C 목표에 부합하도록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현행 2017년 대비 24.4% 감축)를 대폭 강화
  -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탄소예산) 기반 및 위험하고 불확실한 기술의 배제 원칙 확립: 핵에너지, 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등

○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제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폐지 또는 전면 개편
-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정의로운 전환 원칙 등 관련 조항 명시화 및 법적 근거 마련

○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 공적 자금을 투자, 경제 전반의 녹색 전환 추진
- 양질의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추진
- 기후위기 취약층 지원 및 불평등 완화

**Ⅲ. 제안요약**

-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2030년 목표 강화
-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2. 에너지 전환**

**I. 제안배경**

- 산업 진흥을 위한 값싼 에너지 가격 유지로 에너지 다소비 구조 고착화
  - 현행 에너지 가격 체계에 외부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왜곡된 가격 신호 유지
  - 낮은 전기요금 고착화,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역행
- 용도가 불명확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치, 잉여자금 누적
  - 전기요금으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화력발전, 원자력 지원 등 목적 혼재
  - 사업용도 감소로 인해 기금의 잉여자금 누적, 국회와 재정당국의 지적 반복
- 재생에너지 수용성 미흡, 불투명한 보상제도
  - 재생에너지 체계적 개발을 위한 제도적 절차 미흡, 계획입지제 추진 정체
  -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보상 관행 음성화로 갈등 악화, 선진국은 이익공유 제도화로 수용성 확보

**Ⅱ. 정책제안**

○ **에너지 요금 및 세제 개편**

- 에너지 관련 환경 및 사회적 외부비용을 반영한 요금 및 세제 개편, 독립적 비용평가 위원회 설치 및 정보 공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발전용 및 산업용 유연탄 개소세 인상, 유류세 정상화, 원자력세
-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재생에너지 선택 제도 도입
- 화석연료 보조금 즉각 폐지

○ **에너지전환기금 설치 (전력산업기반기금 개편)**

- 전기요금으로 조성되는 현행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에너지전환기금'으로 개편
- 노후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그린리모델링) 및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와 이익 공유 등 에너지 전환 사업 확대 및 기금을 통한 지원

### ○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및 이익공유 제도화

-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도입,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 재생에너지 입지 개발과 주민참여 제도화
-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제도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 및 신뢰성 확보, 에너지전환기금을 통한 지원

### Ⅲ. 제안요약

- 에너지 요금 및 세제 개편
- 에너지전환기금 설치 (전력산업기반기금 개편)
-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및 이익공유 제도화
-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 3. 탈석탄

### I. 제안배경

- 선진국, 기후변화 대응 위한 석탄발전 퇴출 선언
  - 영국 2025년, 덴마크 2030년, 독일 2038년 등 선진국들 잇따라 석탄발전 퇴출 선언
  - 기후 연구기관,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 위해 OECD 국가 2030년 석탄퇴출 권고
- 정부 탈석탄 정책 기조에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강행
  - 신규 석탄발전소 2024년까지 준공 예정,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가중 우려
  - 장거리 송전선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 및 환경 불평등 악화
-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은 계속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막대한 공적금융 투자 계속
  - 좌초자산 리스크 및 녹색기후기금(GCF) 등 개도국 저탄소 전환 지원 원칙에도 위배
- 석탄발전 폐쇄 가속화, 일자리 및 지역 전환 대책은 미흡
  -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 미흡, 사회적 논의에 시민사회 및 노동자 소외

### Ⅱ. 정책제안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 파리협정 1.5°C 목표 달성을 위한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 석탄발전 총량제 도입 및 단계별 감축 제도화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법정 계획에 '석탄발전 제로화' 반영
- 신규 7기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
  - 현재 건설 중인 7기(고성하이, 강릉안인, 포스파워, 신서천)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 동해안~신경기 HVDC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중단 및 백지화
  - 신규 석탄발전 사업 관련 비용평가 산정절차 중단 및 투명한 사회적 공개
- 공적금융 탈석탄 원칙 수립
  -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 신규 석탄발전 및 탄광 개발 등 국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원칙 확립
- 정부, 지자체, 교육청 금고 관련 탈석탄 기준 신설

○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 탈석탄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및 공론화 진행
- 지자체(충남, 경남, 강원),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 참여 보장

**Ⅲ. 제안요약**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 신규 7기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
- 공적금융 탈석탄 원칙 수립
-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4. 탈핵**

**I. 제안배경**

-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 폐쇄,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
- 2017년 대선 당시 거의 모든 후보가 탈핵공약을 내세웠으나, 선거 이후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탈핵 정책은 폐기되었음. 문재인 정부 역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론화로 공약을 바꿔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였음.
- 한편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승-전-탈원전 반대' 논리를 통해 태양광 가짜뉴스 등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은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고 있음.

**Ⅱ. 정책제안**

○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기본으로 하되,
- 세계적으로 공인된 탈핵 로드맵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법 제정 필요
- 또한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주 포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 핵발전소 금지 법제화**

- 문재인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고리 5·6호기 이후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계획을 밝혔으나, 행정계획으로 밝힌 정도에서 언제라도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삼척(대진) 핵발전소의 경우, 지정고시가 해제되었지만, 영덕(천지) 핵발전소와 신울진(신한울) 핵발전소의 경우 계획이 중단된 상태라 계획 수정과 함께 추진될 가능성도 있음.
- 이미 탈핵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관련 내용을 모두 법제화하고 있음.
- 이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내용을 법제화할 필요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 및 권한 강화**

- 현재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기도 했음.
- 이는 핵발전소 안전을 감시하는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임.

○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과 제대로된 공론화 추진**

- 현재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었으며, 국민적 관심도 끌지 못하는 매우 기형적인 상황임.
- 이에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다시 논의할 필요 있음.

○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 실태 조사**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문제, 핵폐기물 무단 방출 및 분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논쟁, 중저준위핵폐기물 계측 오류 등 다양한 쟁점이 있음.
- 이중 특히 안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유명무실한 민관환경감시기구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대전지역 핵시설 안전성을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함.

○ **탈핵 교육/홍보 강화**

- 우리 사회 탈핵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핵발전의 위험성을 떠나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 분산/분권, 재생에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과 홍보 기능의 강화가 요구됨.

-

**Ⅲ. 제안요약**

-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법제화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 줄속적인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
- 대대적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 실태 조사
-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5. 수송부문**

**I. 제안배경**

- 2019년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공식 폐기를 비롯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
- 세계 각국이 잇따라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선언. 한국 역시 디젤차 인센티브 폐지를 넘어선 디젤차 퇴출 로드맵 마련 필요.
- 국내 수송분야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보다 2배 높은 수준이며, 특히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PM은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 직접적인 인체피해 유발
- 국내 미세먼지 배출 기여율 수송 29% [발생원별 : 건설기계 15%(1만5천톤), 선박 34%(3만4천톤), 경유차 42%(4만3천톤)]

**II. 정책제안**

○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마련**

- 미래자동차 시장구조 등을 고려한 친환경차 대책 및 내연기관차 감축 로드맵
- 미세먼지 대책과 온실가스 저감대책간의 조화
- 전략적 친환경차 보급정책 수립(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시행 등, 2020년 예정, 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및 이륜차의 친환경화 지원)

○ 자가용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대폭 개선 및 강화
- BRT확대
- ITS(지능형교통체계)구축 확대, 경제운전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지자체)
- 불법주차 단속 강화 및 도심 주차요금 인상
- 대중교통이 배제된 도시고속화 도로에 대한 유료화 제도 도입
- 차고지 의무 확보제 도입(지자체)
- 차 없는 거리,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대중교통전용 및 보행자 전용지구의 확대

○ 미세먼지 수송분야 관리 대책 강화

- 노후차량 운행제한의 전국확대
- 선박연료전환
- 자동차거래·보유세 개편
- 민감군(어린이, 노인 등) 이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 교통투자 재원확보책 마련

- 교통시설 이용료 현실화(할인·할증시스템 보완, 수익자부담 원칙의 새 교통시설 이용료 신설)
- 경유과세 강화
-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 전환 필요
- 현행 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화, 혼잡지역 주차료 인상 등

○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Ⅲ. 제안요약

-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마련
- 자가용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
- 미세먼지 수송분야 관리 대책 강화
- 교통투자 재원확보책 마련
-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 6. 산업부문

### I. 제안배경

- 사업장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 비중 40%로 1위 배출원
  -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과감하게 감축할 수 있는 정책 필수적.
- 고질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미흡 문제
  - 지자체, 정부 사업장 관리 전담 인력 태부족
  - 2018년 말 기준 지자체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담당자 수는 총 387명으로 1인당 평균 146.2개의 사업장을 담당.
  - 그로 인해 대기 사업장 배출시설 지도점검 위반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

○ 산업시설 배출량 산정 불확도 심각

-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무등록 사업장 관리 미흡, 배출 측정자료 조작 등으로 인한 산업시설 배출량 산정 불확도 심각.
-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17,357개소 공장 중 24.8%가 무등록 또는 불법 공장일 정도로 관리 사각 문제 심각. 전국 현황 파악 필요
- 4-5종 사업장은 4년에 1회 배출량 조사(예산 약 10억), CAPSS자료에 반영.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짐

○ 느슨한 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해 올해 수도권에 한정되어있는 대기관리권역을 4개 권역으로 확대
- 하지만 기존에 이행되던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음. (배출허용총량 대비 실제 배출량이 70% 수준)

**II. 정책제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전담 인력 확충

- 지자체 및 정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배출 조작 등 사전 방지, 무등록 사업장 등 관리사각 지대 축소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 매년 시행

- 현재 4년에 1회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 전수조사를 매년 시행
- 미세먼지 정책의 기초 자료가 되는 CAPSS 자료의 신뢰성과 정책의 실효성 고취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대폭 강화를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유도

**III. 제안요약**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전담 인력 확충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 매년 시행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

## II. 1회용품 &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 자원순환사회 전환 100퍼센트

---

### I. 제안배경

-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은 목표 발생량 50% 감축, 재활용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50% 감축 목표는 1회용품 감량 등과 같은 소비단계에만 치우쳐 있어 생산단계에서의 감량계획이 필요함.
- 현재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 업체들은 생산 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재활용 과정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업체의 경우 플라스틱 규제로 인해 포장재를 종이로 대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플라스틱 감량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폐기물 감량에는 어려움이 있음.
- 1회용품 규제 로드맵도 1회용 비닐봉투, 컵, 스티로폼 박스 등 소수 품목에 대한 규제로만 국한하고 있으며, 역시 소비 단계에 치우치고 있어 1회용 플라스틱 원천 감량에 대한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인해 돼지농가에 잔반급여 금지된 이후 전국에서 하루 평균 1,200톤가량의 음식물쓰레기 방치되면서 침출수, 악취, 폐수 등 환경오염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음식물 쓰레기 제도의 개선 필요.

### II. 정책제안

- **산업계에서의 플라스틱 감량방안 제출 요구**
  - 산업계에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품 생산 시에는 반드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단일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플라스틱이 이슈화되고 있어 기업들은 플라스틱에 한정해서 감량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체재로 종이와 같은 다른 포장재의 사용량 증가가 일어나고 있어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재 원료에 대한 공개 필요.
- **플라스틱세 도입 필요**
  - 현재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을 생산, 사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하여 플라스틱의

생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기업은 현재 책임이 없음. 플라스틱세 도입시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대상으로 부과하도록 해야 함

○ **1회용품 및 포장재 폐기물 감축방안 마련**

- 불법 투기되는 1회용컵 문제 해결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플라스틱뿐만이 아닌 모든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1회용품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함.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강화로 생산 감축을 의무화하고 앞으로 생산되는 신규 1회용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체재 개발 계획 마련해야함.
- 포장재 폐기물 감축을 위해 택배 발송 시 과대포장 방지법 마련하고, 포장재 이중포장 금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함.

○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안 마련**

-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및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처리 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감량 로드맵 마련 필요
- 대형음식점, 가정 등 발생원을 중심으로 감량을 강화하고 배출총량제 도입 필요
- 이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문화 및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확대
-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확대 시행 및 지원

**Ⅲ. 제안요약**

-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을 통한 플라스틱세 도입
-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한 산업계에서의 플라스틱 감량 로드맵 수립
- 음식물 쓰레기 전국 실태조사 및 감량방안 제도 마련

---

# Ⅲ. 환경기준 위반 & 영업비밀 제로 - 건강하고 책임지는 안전사회 전환 100퍼센트

---

## 1.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 I. 제안배경

#### ○ 화학물질관리 규제 완화 요구

- 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한 법률(화평법, 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로 오랜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었지만 규제 비용 인상을 문제로 기업의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특히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유로 과도한 규제에 대한 경제계의 비판이 제기됨.
- 하지만 국내 관련 규제는 해외 규제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으며, 정보의 질과 처벌 조항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유동성이 높아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기본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되돌리면서 발전하는 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해외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음.

#### ○ 근본적 해결 방안

- 화학물질 관리의 책임은 기업에게 있고 정부의 역할은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있음.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제체가 어렵다는 기업의 불만은 규제완화가 아닌 산업 활동 기반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제도 보완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함.
- 오히려 중복 규제로 공격받고 있는 현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각 부처별로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기업의 행정적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함.

### II. 정책제안

#### ○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 위생용품법, 산업부의 어린이제품 특별법,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등 개별 부처로 나뉘어 있으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화학물질의 관리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노동부, 환경부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관리의 기준이 서로 달라 기업의 중복 규제 등 규제 완화 요구의 중심이 되는 상황.
- 근본인 해결을 위해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를 일원화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는 체계의 변화가 필요함. 화학물질 정보 관리를 환경부의 화평법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는 이 정보에 따라 노동자, 소비자 등 보호 대상에 따른 노출 관리를 중심으로 전문화가 요구됨.
- 가장 시급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화평법의 위상을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법으로 상향 논의
- 화학물질 관리 기본법을 통해 독성의 분류를 체계화하고, 이 독성에 따른 관리를 표준화하는 화평법, 화관법, 산업법 개정 필요
-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환경부로 이관

### Ⅲ. 제안요약

-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위상을 화학물질 관리 기본법으로 상향
-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I. 제안배경

- 기업의 책임 인식 부재
  -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판단하고 유출이나 사용중의 등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은 기업에 있음. 하지만 이런 당연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법을 후퇴시키거나 위반하면서 회피하려고 있음.
  - 2015년부터 대기오염물질과 특정유해물질 배출치를 조작하여 적발된 기업중에는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음. 20여개 업체 1만 차례 이상 조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적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도 당연한 기업의 책임이 정부와 피해자에게 미뤄지면서 생긴 결과.
  - 제품 생산시 안전성 입증을 하지 않아 생긴 문제가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으로 돌아오고, 기업은 정부의 연구 사업과 피해 여부 판단 뒤에서 방관하는 모습으로 비춰짐.
  -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적으로라도 이행하게 하는 조치가 논의되어야 하며,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 책임이 기업에게 부과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Ⅱ. 정책제안

#### ○ 화학물질 관리 책임의 강화

- 원칙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 입증 및 안전 관리의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 강화가 필요.
- 유해한 화학물질의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사고, 관리 부실로 인한 산재와 지역 사회 사고 등의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해 의도적인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환경, 생활안전사고 등에는 보다 강한 처벌 제도 필요.
- 또한 피해유발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에 대한 인정 기준을 확대하여 환경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함.

-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허위 정보 등록에 대한 처벌 제도의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의 행정(형사) 처분 강화
- 환경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징벌적배상제도 도입
-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 환경오염피해제도 적용대상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기업 확대 개정

#### ○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실효성' 강화

-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은 발암물질 중 IARC(국제등급분류기구) 1등급 9종만을 배출저감 대상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연간 1톤 이상(30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해당하는 발암물질 배출저감대상 사업장 수는 220여개('20.2) 남짓으로, 전체 배출량 조사 대상(3,732개)의 약 10%의 사업장에 불과함.
- 유해성을 고려한 중점관리물질이 지정되고 배출저감 대상물질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함. 또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배출량 뿐 아니라 사업장 자체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저감 계획이 확대 될 필요가 있음.
- 배출저감 이행결과를 지역사회에 공개함으로써, 지방정부가 관리,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유해성 중심의 중점관리물질 설정을 통한 배출 저감 대상 물질 확대
- 화학물질 배출저감대상 사업장 확대 적용
- 화학물질 배출량이 아닌 화학물질 사용량 저감 계획 마련
- 배출저감 이행결과의 공개와 지방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 강화

### Ⅲ. 제안요약

-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 실효성 있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 3. 국민 안전 확보

### I. 제안배경

#### ○ 화학물질 정보 소통 문제

-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권리가 있고 노동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지만, 이런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 사회의 문제.
- 화학물질의 사용하는 기업이 그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하고 기업은 그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정보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 비밀이 남용되면서 소비자와 노동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
- 가습기살균제 소비자, 반도체 생산가 노동자 모두 이런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입증의 책임까지 당사자에게 전가되고 기업의 논리에 휘둘리면서 해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화학물질과 제품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정보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확고히 하여야 함.

### Ⅱ. 정책제안

#### ○ 화학물질 정보 정보 소통 강화

-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용도”를 정부에 신고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 성분을 공개(표시)되지 않음으로서, 소비자가 제품 위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 또한 기업비밀이 남용되면서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 대안은 없는 상황. 독성과 용도의 검증 등 화학물질 안전정보의 질적 향상이 필요.
- 이와 관련한 정책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비

릇한 논의 기구의 위원 선정과 회의 등의 공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살생물제 및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제도화
- 생활화학제품 위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제도 개선 (CLP제도 확장)
- 기업의 영업비밀 인정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정보 공개 확대
- 각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선정 방식, 회의 등의 공개에 대한 개정 논의
- 제품 안전 자료가 제조사·판매사·소비자 간 공유되도록 제품안전보건자료(PSDS ; Product Safety Data Sheet) 작성의무화 도입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 현행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지나치게 좁은 피해인정 질환의 범위, 구제 계정과 구제급여 구분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차별을 가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 지원내용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뜻을 모아 만들어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19.12)되었지만, 기획재정부나 법무부 등이 피해자 입증 책임 전환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에 이견을 보여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의결이 보류되고 있음.
- 피해자에 대한 단계적 구분을 없애고, 구제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요구되던 입증책임 문제전환을 비롯해 피해자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폭넓은 구제방안이 필요함.

**Ⅲ. 제안요약**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표시제 도입
- 생활화학제품 독성 분류에 따른 표기 제도(CLP) 도입
- 화학물질 안전정보 질적 향상과 안전 자료 공유 의무화 도입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 IV. 국토 막개발 제로

### - 1인당 도시공원면적 WHO 기준 달성 100퍼센트

#### 1. 국립공원 개발공약 금지 및 토지매수청구제도 공약

##### I. 제안배경

###### ○ 4.15총선 시, 국립공원 대상 개발 공약 난발 예상

- 2020년 제3차 국립공원 재계획(타당성 조사)에 따라 전국 지자체 및 사유지 소유자들의 공원구역 해제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음. 더불어 4.15총선을 앞두고 정당 및 후보자별 개발 공약도 난발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일부 지자체들이 4.15총선에 맞춰 설악산오색케이블카와 흑산도 공항건설사업을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현행법 상 불가능한 사유재산권환수 및 행위제한 완화요구가 거세짐으로써 불필요한 갈등도 촉발될 것이 다분함

###### ○ 국립공원 사유지 매입을 통한 주민 재산권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자연공원법상 \*토지매수청구제도<sup>1)</sup>의 실효성 및 현실성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만 팽배한 상황이므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립공원 보전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여야 다수의 국회의원이 제기한바 있고, 지역주민들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사안임. 따라서 각 정당은 개인 사유지 매입비용 증액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II. 정책제안

###### ○ 국립공원 내 토지매수 청구제도 완화

- 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총 3,973km<sup>2</sup>이고, 이중 개인 사유지는 1,008km<sup>2</sup>(25.4%)에 해당함. 이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방해라는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되고, 심화되는 상황임
- 현행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 구역 내 위치한 사유지가 종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정부에게 사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토지매수청구 시,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이어야만 토지매수청구 대상에 해당하여, 해당 가격으로 형성된 토지가 거의 없음. 이로인해 토지매수청구 제도

1) 토지매수청구제도: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자연공원법 제77조)

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 있음.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해 정책공약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요구됨

\* 지난 3년간 토지매수청구는 1건에 불과, 적합판정률은 0%

- (현재) 지목대로 사용 불가 및 공시지가 70% 미만 등 → (개선) 사실상 사용 불가(불허가)인 경우 매수청구 가능으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필요
- (효과)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전지구 내 모든 토지,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임야, 대지, 잡종지 등 매수 가능 → 약 4,000억 원 매수 효과 가능할 것으로 추정
- 또한, 현재 개인 사유지 1,008km<sup>2</sup>에 대한 전체 매입비용이 공시지가로 약 2조원('18년 기준)이고, 매입 추정 비용(공시지가\*2.5)은 약 5.2조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사유지를 매입예산을 증액하여, 국립공원 보전과 지역주민 재산권 회복에 기여 하는 방안 모색할 필요도 검토해야 할 것임

### Ⅲ. 제안요약

- 4.15총선 시, 국립공원 개발 공약 금지 선언 시행
- 국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완화방안 도입
-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예산 증액으로 국립공원 보전과 주민 재산권 회복방안 모색

## 2. 도시공원 법제도 개정 및 보상

### I. 제안 배경

- 도시공원면적은 현재 1인당 평균 8m<sup>2</sup>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1인당 도시공원면적 12m<sup>2</sup>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6월 이후 전국적으로 504km<sup>2</sup>의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인 해제 될 예정임. 이로 인해 1인당 공원면적은 4m<sup>2</sup>에 불과하게 되며, 이는 앞서 나온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따른 법정 1인당 도시공원면적인 6m<sup>2</sup>,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 기준인 인구 1인당 9m<sup>2</sup>에 현저히 부족하게 됨.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으로 인한 자연녹지와, 농촌지역보호를 목적으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도시 전체에서 운영 되고 있음. 미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이 도심 공동화와 인프라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호주 캔버라의 경우는 시민들을 위한 관광 위락공간으로서 제공하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 파리시 외곽지역에 자연균형지역으로 러시아는 모스크바 주변 폭 16km를 그린벨트로 지정 운영 중임
  - 2016년 기준 경지(논밭)면적은 국토면적 대비 16.4%에 불과하며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605km<sup>2</sup>와 인천에서 1,049km<sup>2</sup> 면적이 감소
  -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제3기 신도시건설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수도권의 녹지와 농지 4,309.3만m<sup>2</sup>(약43km<sup>2</sup>)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예정

### Ⅱ. 정책 제안

#### ○ 도시공원 관련 법제도 개정 및 보상수단 마련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시공원 중 위원요소가 없는 임야 및 논, 밭에 대한 도시공원일몰제를 폐기하고,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원녹지법 개정이 필요하며, 도시공원 중 임야나 논밭에 대해 임차공원 등 다양한 대안 정책 마련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하고, 과도한 사유재산권침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긴급국고지원 추경을 편성해야 하

며, 비용확보 수단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용처 및 비율 조정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경우 총 78개소, 25km<sup>2</sup>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실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곳은 3곳에 불과하여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므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
- 근린공원 등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현 자연공원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로 이관하고, 도시녹지의 경우 산지를 관장하는 산림청으로 이관할 필요 있음.

#### ○ 자연침해조정제도 연내 입법

- 현재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정화기능 물 순환과 홍수방지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복원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선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현실화하여 추진할 예정임. 이는 지방정부에게 교부되어 향후 지자체에서 도시공원 등 과도한 사유재산권침해 우려가 있는 보전용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입법추진이 필요

### Ⅲ. 제안 요약

- 위헌 요소없는 임야 및 논밭에 대한 도시공원일몰제 폐지(현재판결상, 오류)
- 자연침해조정제도 연내 입법 및 시행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35%로 상향 조정
- 도시공원 '해제 시 난개발 우려 지역' 21.5km<sup>2</sup>에 대한 긴급 국고지원 2,646억원 투입
- 주민갈등 등 문제가 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전면 재검토 및 대안마련과 도시공원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추진

# V. 쓸모없는 댐 제로

## - 4대강 자연성 회복 100퍼센트

### 1.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수립 및 4대강 자연성 회복법 제정

#### I. 제안배경

- 정책실패 사업의 전형인 4대강 사업
  - 22조 원의 국민 세금을 들인 4대강 사업은 사업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된 사업으로 홍수저감, 가뭄해소, 수질개선 등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사업목적은 그 무엇도 달성되지 않고, 여름철 녹조로 대표되는 4대강 수질 악화는 매해 반복되는 우리 강의 재앙으로 다가왔음.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대강 재자연화 전기가 마련되었으나, 2020년 2월 현재 16개 보 처리방안 확정을 비롯해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임
- 변화한 시대 상황에서도 여전히 선진국과 괴리된 수자원 정책
  - 과거 우리나라는 수자원 확보 중심의 정책을 펴왔으나,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유역 중심의 물관리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II. 정책제안

- 16개 보 처리방안 확정을 포함해 확고부동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추진
  -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보 처리방안 확정, 2019년 4대강 재자연화로드맵 추진을 공언했으나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보 처리방안 확정 및 후속 방안 집행 필요.
  -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 및 모니터링 추진 시급. 한강,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
  - 16개 보 처리방안 확정을 포함해 다양한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4대강 자연성 회복법을 제정해야 함
  - 영주댐을 비롯해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토목사업은 전반적인 하천 생태계에 치명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낙동강의 건강한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 우선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하천변 과도한 개발을 유발하는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을 폐기해야함
- 물관리일원화 안착과 선진적인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 20년 넘게 논의해온 물관리일원화를 2018년 정부조직법 개편, 물관리기본법 제정 등을 이뤄냈으나, 하천관리 기능을 국토부에 존치시켜 하천관리이원화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 통합적 유역관리 정책을 위해서 국토부에 남은 하천법을 환경부로 이관해야함
  - 우리나라도 하굿둑이 수질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국토 전역에 용도를 상실한 댐과

보가 방치되고 있음. 하굿둑과 효용이 없는 댐과 보를 해체함으로써 수자원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 Ⅲ. 제안요약

-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수립 및 「4대강 자연성 회복법」 제정
-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과 한강, 낙동강 보 처리방안 수립
- 영주댐 처리방안 수립
- 4대강 사업 후속사업(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중단과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폐기
- 하천관리 환경부 이관 및 하굿둑, 효용 다한 댐과 보 등 해체사업 추진

## 2.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재정비

### I. 제안배경

#### ○ 적수·우라늄 등 수돗물 사고로 인한 수돗물 불신 증대

- 2019년 적수사태와 우라늄 검출 사고로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증대한 상황임
- 인천 수돗물사태를 통해, 인천시가 수계 전환 시 작업 매뉴얼을 위반했으며 이후 수습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돗물 시설 관리 자격요건 미충족 직원 배치 등 운영관리 측면에서 역량 부족과 수돗물 시설 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 숙지 등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됨
- 특히, 사고 발생 시 중앙·지방 협조체계 미비, 사고대응 전문성의 부족 등 사고대응체계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전국 수도관(20만km) 중 1.5만km가 노후화된 상태로 확인되며, 노후관의 22%만 정비사업 중

#### ○ 공급자 중심의 수도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

- 수질 실시간 공개시스템 등의 부재로 시민 중심의 수돗물 정보서비스와 수돗물 사고 시 시민소통 매뉴얼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안심확인제'는 일부 지자체만 시행중

### Ⅱ. 정책제안

#### ○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재정비

- 상수관망 진단, 관리강화(7,867억원), 노후관로 정비사업 확대실시(166억원),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3,557억원) 등에만 예산이 쓰린다면 지자체에서 감당할 업체와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수돗물 인프라 시설 중심의 예산배정을 재고할 필요
-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신뢰도에 대한 평가 선행 후 수질정보 공개시스템과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
- 수돗물 안전 관리·운영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직 확대, 전문자격증, 학위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수립 확보 필요
- 노후 상수관로의 사전예방적 대응을 위한 자산관리제 도입, 수도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구체화 등 수도법 개정이 필요
- 주민의견 수렴 시스템의 구축으로 정책 입안 시, 시민사회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도

입이 필요

**Ⅲ. 제안요약**

- 적수·우라늄 등 수돗물 사고 대응체계 재정비
- 관망 관리 중심 및 선진화·현대화·스마트사업 중심 탈피
- 수돗물 문화 및 교육 등 시민 소통 확대 정책 강화
- 자산관리제 도입 등 수도법 개정

---

# VI. 마구잡이 개발·불법어업 제로- 해양생태계 지속가능성 100%

---

## 1. 해양 생태계 보호

### I. 제안배경

- 해양보호구역 확대 움직임
  -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2010년)에서 각 국가는 2020년까지 관할 해역의 1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목표 설정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세계공원총회(2014년)에서 170개국의 참석자가 생태학적 대표성을 가진 해양보호구역 시스템을 시급히 확대할 것을 촉구
  
- 국내 해양보호구역 정비 필요
  -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각 관계부처에서 각각 다른 법적 근거로 보호구역 지정 관리하고 있음
  -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4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3곳 등 총 30곳이며 면적은 약 1,782km<sup>2</sup>임(해양수산부 관리 기준)
  - 한국 관할 해역 면적 대비 2% 정도로, 목표인 10%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임
  
- 실효성 없는 보호구역 지정
  -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이용·개발행위가 진행됨
  -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보호관리를 위한 예산 배정, 담당인력 배치, 보호정책이 연동되지 않음
  
- 해양생물의 급격한 감소
  - 무분별한 남획,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 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고래 등 해양포유류의 1/3 이상이 멸종위기에 놓임
  -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반 한 해양 공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II. 정책제안

-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
  - 국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의, 범위, 관리체계 강화 필요
  -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통합적 평가시스템 구축
  
- 해양보호구역 내 위협요인 관리 및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 마련
  -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예산 배정, 전담 인력, 보호정책 연동 제도화
  - 해양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조항 확대 및 예외조항 최소화
  - 해양쓰레기 처리 및 위해시설 제거

-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강화 및 지역 사회 참여 방안 확대

○ 해양생물 보호 방안 마련

- 해양보호구역 및 해양생물보호 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
- 해양생물의 주요 산란지, 서식지, 이동경로를 고려한 보호정책 수립
- 해양포유류에 대한 포획, 위협, 서식지파괴 등을 금지하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 불법 포획시 처벌규정 강화

**Ⅲ. 제안요약**

-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예산, 전담 기구 및 인력, 보호정책 연동 제도화
-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2. 지속가능한 어업**

**I. 제안배경**

○ 연근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

- 유엔농업수산기구(FAO)는 전 세계 어획물의 30%가 연근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획물로 추정
- 기간(금어기), 공간(어업 불가 지역)을 무시한 불법어업이 조직화, 관습화 되어 있음
- 2016년부터 국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마지노선인 100만 톤 이하로 떨어지면서 수산자원고갈의 위기가 현실화됨

○ 관리·규제 시스템 미비

- 관리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어업정보시스템이 부재함
- 어구 생산, 유통, 폐기 등 관리가 어려움
- 총허용어획량(TAC)으로 지정된 어종만 집계되어 전체 어종의 어업량 판단 불가

○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어업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생산방식에 대한 관리가 필요

**Ⅱ. 정책제안**

○ 어업정보시스템 구축

- 지도단속을 위해 어선, 허가어업, 면허어업, 어구, 시기별 목적 어종, 금어기, 포획 금지체장 등의 어업정보시스템 마련
- 연근해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의무화

○ 어획량 및 어구 관리

- 자원량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어종 확대 및 할당량 조정
- 어린물고기 등 고의 혼획 및 남획 제한
- 어구관리법 제정

○ 수산물 이력제 도입

- 현재 양식 조기와 굴에 시범적으로 적용된 수산물 이력제를 전 어종에 확대
- 포획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추적 가능한 시스템 도입

### Ⅲ. 제안요약

- 어업 정보 시스템 구축
- 어구관리법 제정
- 수산물 이력제 도입

---

# Ⅶ. 먹거리 불평등 제로 -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회 전환 100%

---

## I. 제안배경

### ○ 먹거리체계(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와 환경 간의 높은 상호연관성

- 먹거리 생산은 토지, 수질, 기후 등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예: 기후 온난화로 인한 작물과 어종의 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등)
- 반대로, 먹거리생산은 생태계에 영향을 끼침(토질오염, 해양산성화/ 토양보존 등)
- 먹거리체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먹거리의 생산에 폐기되는 식량자원, 배달시 플라스틱 문제 등)의 문제 등 먹거리와 환경은 상호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음
- 따라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먹거리체계를 혁신하는 것을 통해 환경 보전은 물론 국내 농민과 소비자들의 삶의 질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먹거리기본권 보장은 사회·건강 불평등을 해결하는 핵심 정책

- 먹거리기본권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한 기본 인권의 문제
- 소득양극화와 사회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먹거리기본권 보장에서의 격차 발생
-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먹거리 접근의 저하, 아동/청년 등 젊은 세대의 식생활문제가 건강문제(비만, 면역성 질환 등)로 직결되므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개입 필요

### ○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 증가

-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통해 환경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사례가 증가(SDGs, 먹거리전략, 푸드플랜, 도시먹거리정책 등)
- 2017년 이후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전주시 등이 먹거리전략 발표, 2019년 농식품부가 푸드플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합적인 목표와 집행 체계의 부재

## Ⅱ. 정책제안

### ○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차원에서 먹거리정책의 위상 재설정

- 먹거리와 환경간의 상호연관성을 인지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차원에서 먹거리정책의 위상 재설정
-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농식품부(생산/유통), 보건복지부(식품안전/어린이식생활), 교육부(식생활교육) 등에서 분산/추진하는 먹거리정책의 통합 목표 및 전략 마련

- SDGs 목표2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먹거리보장 정책 연계

○ **국민건강 증진과 신뢰확보를 위한 먹거리 안전관리체계의 재정비**

- 유전자변형식품(GMO), 방사능오염, 신종농약잔류, 동물성바이러스, 식품가공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불안감과 국가 정책에 대한 높은 불신
- GMO 완전표시제 시행, 수입농수산물식품의 관리체계 정비와 함께 먹거리체계의 생태적 접근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

○ **공공급식 건강한 먹거리기준 마련 및 전달체계의 연계**

- 단체급식(학교, 지역아동센터, 병원, 보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군대 등), 현물지원(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노인도시락배달, 결식아동지원사업 등)의 건강 먹거리기준 마련
- 중앙정부부처(농식품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급식의 연계 및 역할 분담을 통한 정책효과 증대

○ **미래세대의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아동 건강 먹거리종합정책 수립**

- 아동이 속한 사회계층에 따라 발생하는 먹거리 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짐(천식, 아토피, 당뇨, 비만 등 식이성 질병)
- 가공식품의 안전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과 종합계획을 아동먹거리 전반을 관장하는 제도의 위상에서 개정 필요(공공급식 기준, 식생활교육 계획, 민관 거버넌스 등을 포함)
- 식품안전과 영양교육에 집중하는 어린이식생활종합센터의 기능과 역할 제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개편, 지역아동센터/돌봄센터 등 공공급식 강화 등

○ **마을부엌, 공동체텃밭 등 공동체먹거리보장 정책 확대**

- 사회구조변화에 따라 저소득층, 독거노인 외에도 1인 가구자, 청년층, 노인층 등에서 경제적 이유가 아닌 사회문화적(시간, 정보, 건강 등) 문제로 발생하는 미보장 인구 증가
- 마을부엌, 공동체텃밭, 농부시장 등 공동체먹거리보장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 **건강먹거리교육 확대: 식생활교육의 개편 · 사회 취약계층 교육 확대**

- 현재 안전, 위생, 영양을 중심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을 먹거리순환, 생태, 건강, 조리/텃밭 실습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으로 전환
- 건강취약계층(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시설보호청소년(6호처분시설, 쉼터, 소년원 등) 등으로 건강먹거리교육의 확대

**Ⅲ. 제안요약**

- 지속가능발전 전략 차원에서 먹거리정책 위상 재설정
- GMO완전표시제 등 먹거리안전관리 체계의 재정비
- 공공급식 건강먹거리 기준 마련 및 전달체계의 연계
- 아동 건강먹거리 종합정책 수립: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 등
- 공동체먹거리보장 정책 확대: 마을부엌, 공동체텃밭, 농부시장 등 지원
- 건강먹거리교육 확대: 식생활교육 개편, 시설보호청소년 등 교육 확대

---

## Ⅷ. 환경부정의 제로— 환경개발사업 주민의견수렴100%

---

### I. 제안배경

- 환경부정의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
  -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관한 권한, 공공의 의사결정 참여 그리고 환경 사안의 사법 접근권은 환경 민주주의 세 가지 핵심 원리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가치임
  -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과 환경 약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 환경민주주의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 (사)환경정의가 2019년 국내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 법률 평가에서 3점 만점에 1.48점으로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의 평가 점수와 비교하면 세계 71개 국 중 35위임. 특히 공공참여 부문은 0.81점으로 세계 44위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으로 드러나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크게 지적됨
  - 현장 환경활동가들의 환경민주주의 평가에서도 환경정보 접근,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 세 분야 모두 낙제 점수를 받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

### II. 정책제안

- 환경정보 접근과 이용에 관한 권리 강화
  -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환경정보의 추가적인 생산과 공개
  - 환경정보의 접근권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전달 체계 마련
  - 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주민의견개선 보장 및 협의과정에 실질적 참여 보장
  -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
  - 환경정책 결정 초기단계에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 환경 사법 접근권의 강화
  - 환경공익소송에서 원고적격 범위를 확대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하여 완화된 인과관계 인정 필요
- 환경교육 활성화
  - 미세먼지, 화학물질, 폐기물,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인식과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해야 함

- 정규교육 과정 및 지역 사회에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환경교육계획 및 관련 법률에 반영

### **Ⅲ. 제안요약**

- 정보공개법 개정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 환경교육 활성화
- 오르후스 협약 가입 추진